

경기도 작은도서관 조례 분석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and Direction for Revision of the Small Library Ordinance in Gyeonggi-do

최 만 호(Manho Choi)* · 노 영 희(Younghee Noh)**
장 로 사(Rosa Chang)*** · 김 윤 정(Yoonjeong Kim)****

〈 목 차 〉

I. 서론	V. 경기도 작은도서관 조례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II. 선행연구	VI. 논의
III. 연구설계 및 연구질문	VII. 결론 및 제언
IV. 분석결과	

요 약: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양적으로 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작은도서관이 내실화를 통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정책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방향 및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작은도서관 관련 도서관법 및 사업 추진 강화, ②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도서관법 조항 강제조항으로 제정, ③ 「도서관법」에 관련 조항이 있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도 「도서관법」에서 명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항만이라도 간단히 기술, ④ 해당 시군 작은도서관의 봉사대상자의 수와 장서의 규모를 반영한 작은도서관 확보 운영인력의 수 및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 규정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작은도서관, 경기도, 조례, 개정(안)

ABSTRACT: It is expected that Gyeonggi-do Small Libraries will increase in quantity in the future due to the current SOC complex project being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and it is deemed that institutional and policy support must be provided with priority in order for the Small Libraries to grow qualitativel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ubstantial measur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reform measures proposed to revitalize Gyeonggi-do Small Libraries in terms of ordinances as follows: ① strengthen the library law and business promotion related to Small Libraries; ② enact the mandatory library law provisions for the installa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Libraries; ③ even if there are relevant provisions in the 「Library Act」, the local governments' Small Libraries Support Ordinances should at least simply state that they must meet the criteria specified in the 「Library Act」; and ④ provisions on the number and qualifications of operating personnel of Small Libraries reflecting the number of users and the size of collections of books of Small Libraries of cities and counties.

KEYWORDS: Small Library, Gyeonggi-do, Ordinance, Amendment(draft)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 (webboy@kku.ac.kr / ISNI 0000 0004 8515 2125) (제1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교신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rschang120@gmail.com / ISNI 0000 0004 7707 1229) (공동저자)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onj199@kku.ac.kr / ISNI 0000 0004 7936 5706) (공동저자)

• 논문접수: 2020년 5월 18일 • 최초심사: 2020년 5월 31일 • 게재확정: 2020년 6월 22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2), 187-212, 2020. [http://dx.doi.org/10.16981/kliss.51.2.202006.187]

I. 서론

영국의 경제학자인 Schmacher(1973)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라는 저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작은 것은 자유롭고 창조적이고 효과적이며, 편하고 즐겁고 영원하다”라고 하면서 ‘작은 것’의 소중함을 역설하였다. 즉, 작은 것은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보다 인간에 가깝다는 큰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작은도서관의 개념도 ‘작은’도서관이 아닌 ‘작은도서관’으로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도서관이면서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권역에 보다 가까운 생활친화형 독서문화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정기원 2019). 이에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편하고 즐거운 특성을 지니는 작은도서관은 보다 인간중심적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며,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가치는 근래 한국 사회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최근 한국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복합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도서관 및 동네 작은도서관을 확충해나갈 계획임을 공시하였다. 즉, 올해부터 3개년 동안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과 같은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3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집에서 10분 이내 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동네 작은도서관을 기존의 6,058개에서 6,700여개로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박주성 2019).

또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는 전략 설정 방향으로서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핵심과제로서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추진과제로서 도서관 법·제도·평가의 현실적 개정을 설정하였다. 특히 도서관 인력기준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교육청에 도서관정책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정책담당 사서를 배치하며, 인력배치를 반영한 도서관 정책지수를 개발하여 운영평가와의 연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명시하였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뿐만 아니라 전국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역별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작은도서관은 총6,330개관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가 1,536개관으로서 2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경기도 작은도서관의 연간 증감률을 살펴보았을 때, 2016년 1,361개에서 2017년에는 1,438개관, 2018년에는 1,536개관으로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방향 및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

관이 양적으로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향후 작은도서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의 질적인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작은도서관의 가치를 보다 증대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작은도서관 조례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김홍렬(2010)은 전국 단위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제점으로 첫째, 조례의 구성항목이 큰 차이가 없었으며, 둘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조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고, 셋째, 강제조항보다는 임의조항이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의 규모가 상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조례의 개선방안으로서 ①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설립에 대한 조항에서 지역의 도서관 인프라를 고려하여 제시, ② 조례에 다양한 작은도서관의 형태를 반영, ③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문화적 환경에 맞게 조례 제정, ④ 조례에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시, ⑤ 작은도서관 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한국도서관협회 차원의 도서관기준 마련, ⑥ 지역의 공공도서관 운영규정과 연계하거나 참조하여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유양근, 박송이(2010)는 18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분석하고, 경기도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를 조사하여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운영방안을 시설, 자료, 인력, 프로그램, 네트워크 5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으며, 첫째, 시설 측면에서 주말 운영 확대하고, 조례에 도서관의 기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자료 측면에서 비도서 자료를 확충하고, 인터넷 망을 구축하며, 폐기기준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인력 측면에서 상근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측면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다양화하며, 사랑방 모임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네트워크 측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연계하며, 공공도서관과의 활발한 협력망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특화된 작은도서관을 육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승원(2011)은 4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조사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은도서관 지원 방법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예산 지원과 같은 직

접적인 지원과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자 지원 등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직접적 및 간접적인 지원 모두가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에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간접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정현태, 정미연(2013)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 조례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도서관 관련 조례의 운영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서관운영조례가 5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작은도서관조례가 16.8%로 2순위를 차지하였다. 도서관 관련조례의 운영개선 방안으로서 첫째, 합리적인 도서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하는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증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둘째, 조례 명칭에 도서관을 반드시 기술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개별 도서관운영조례는 지역단위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조례에 통합하며, 넷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조례를 통합하여 도서관운영조례로 일원화하고, 다섯째, 독서문화진흥조례를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조례와 통합·운영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김유승(2014)은 114건의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법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법제도의 당면과제를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시설 및 자료 기준 측면에서 조례를 표본 삼아 「도서관법」의 기준에서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보다 현실화하여 규정해야 함을 당면과제로 제시하였다. 둘째, 운영인력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춘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배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제정되어야 함을 당면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셋째, 지원과 관리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이 온전한 기능과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 온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함을 당면과제로 제시하였다.

김홍렬(2014)은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자치법규의 제정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도서관 자치법규는 총629건으로서 조례가 393건, 규칙이 187건, 훈령(규정)이 43건, 예규(지침)가 6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분석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첫째, 현재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함께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무엇보다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과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넷째,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규모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를 통합하여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1〉 관련 선행연구의 시사점

연도	연구자	시사점
2010	김홍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 조례 개선방안 •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설립에 대한 조항에서 지역의 도서관 인프라를 고려하여 제시 • 조례에 다양한 작은도서관의 형태를 반영 •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문화적 환경에 맞게 조례 제정 • 조례에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시 • 작은도서관 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한국도서관협회 차원의 도서관기준 마련 • 지역의 공공도서관 운영규정과 연계하거나 참조하여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을 제시
	유양근, 박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포함하여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 시설 측면에서 주말 운영 확대하고, 조례에 도서관의 기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규정 • 자료 측면에서 비도서 자료를 확충하고, 인터넷 망을 구축하며, 폐기기준을 완화 • 인력 측면에서 상근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교육을 실시 • 프로그램 측면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다양화하며, 사랑방 모임을 다양화 • 네트워크 측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연계하며, 공공도서관과의 활발한 협력망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특화된 작은도서관을 육성
2011	이승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 지원 방법 • 공립 작은도서관: 직접적 및 간접적인 지원 모두 필요 • 사립 작은도서관: 간접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직접적 지원: 예산 지원 • 간접적 지원: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자 지원 등
2013	정현태, 정미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관련조례의 운영개선 방안 • 합리적인 도서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하는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증대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조례 명칭에 도서관을 반드시 기술 • 개별 도서관운영조례는 지역단위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조례에 통합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조례를 통합하여 도서관운영조례로 일원화 • 독서문화진흥조례를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조례와 통합·운영
2014	김유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 관련 법제도의 당면과제 • 시설 및 자료 기준 측면에서 조례를 표본 삼아 「도서관법」의 기준에서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보다 현실화하여 규정해야 함 • 운영인력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춘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배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제정되어야 함 • 지원과 관리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이 온전한 기능과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 온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함
	김홍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제정의 개선방안 • 현재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 •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함께 제정 • 무엇보다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과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규모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를 통합하여 제정

본 연구에서 개관한 선행연구를 모두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독서문화진흥조례 등 다양한 도서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김홍렬(2014)의 연구에서는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과 함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최근 한국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동네 작은도서관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뉴시스, 2019.04.15.). 따라서 현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대한 제정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길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관한 여러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작은도서관 조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작은도서관에 전문성을 지닌 운영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의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김홍렬 2010; 유양근, 박송이 2010; 이승원 2011; 김유승 2014).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작은도서관의 수는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질적인 내실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작은도서관의 질적인 내실화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전문성을 갖춘 운영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전문성을 지닌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배치 및 정규적인 교육의 실시에 대한 의무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단순한 조례 분석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본청 및 시군에서 작은도서관 조례를 개정 및 제정할 시에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Ⅲ. 연구설계 및 연구질문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연구설계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으며, 총3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1단계는 이론연구단계로서 문헌조사를 통해 관련된 선행연구를 개관하였으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 2단계는 현황조사단계로서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조례를 분석하였으며,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결과도출단계로서 문헌조사 및 조례분석 결과를 종합·정리

하여 향후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조례 개정방향 및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논의점으로서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단계	연구방법	연구내용
1단계 이론연구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개관 · 시사점 도출
2단계 현황조사	조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조례 분석 · 문제점 도출
3단계 결과도출	종합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조례 개정방향 및 개정(안) 제안 · 경기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그림 1〉 연구설계 모형

2.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 논의될 연구질문은 크게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RQ 1: 현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의 제정현황 및 조항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 RQ 2: 현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RQ 3: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 개정방향으로 무엇을 들 수 있는가?
- RQ 4: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 개정(안)을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가?
- RQ 5: 향후 경기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무엇을 제안할 수 있는가?

IV. 분석결과

1. 분석방법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Enhanced Local Laws and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¹⁾을 이용하여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사하였다. 검색시스템에서 검색조건으로 지역을 ‘경기도’로 제한하였으며, 키워드로는 ‘작은도서관’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총 27건의 조례가 검색되었다.

ELIS를 활용하여 조례를 분석하는 것은 보편적인 연구방법이며, 전국단위 작은도서관 조례 분석을 한 선행연구는 있으나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 31개 시군에 포커스를 두고 조례를 분석한 논문은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분석은 첫째,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의 제정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둘째, 세부적인 조례 조항에 대한 내용분석으로서 구성현황을 살펴보았다.

2. 경기도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의 제정현황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정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았으며, 실제 제정된 조례명도 조사하였다.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4곳(75.0%)에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정부시 1곳(3.1%)은 작은도서관 조례 대신에 운영평가에 대한 규정이 제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아직까지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는 18.8%로서 6곳(과천시, 동두천시, 시흥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으로 나타났으며, 주목되는 점으로서 포천시 2014년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19년에 폐지된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는 포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와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던 것을 이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통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포천시는 새로 개정된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항을 제4장 작은도서관 파트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면, 경기도에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8년에 광명시와 파주시 2곳(광명시, 파주시)에서 제정된 것이 시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광명시의 조례명에 명기된 ‘작은 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조례가 규정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로서 ‘작은도서관’을 하나의 명사로 취급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이 도서관의 한 관종으로서 인정받게 된 최근의 경향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available at: <http://www.elis.go.kr/>

〈표 2〉 연도별 경기도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의 제정현황

연도	시군	조례명	비고
2008	광명시	•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과천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2009	하남시	•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0	성남시	•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1	경기도	•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군포시	• 군포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2012	화성시	•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2013	남양주시	•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수원시	•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김포시	•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이천시	•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포천시	• 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10.13. 제정 2019.05.22. 폐지
2015	가평군	• 가평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오산시	• 오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	용인시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의왕시	•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의정부시	• 의정부시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훈련(규정)
	평택시	• 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8	구리시	•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2019		•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조례 미(未) 제정		과천시	
		동두천시	
		시흥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이후 2011년에 경기도 본청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 때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5곳(군포시, 안양시, 양평군, 화성시)으로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이 제정된 것으로 규명되었다.

또한 구리시에서 가장 최근에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체적으로 2018년에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9년에는 이에 대한 시행규

칙이 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의정부시는 2017년에 조례 대신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3. 경기도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조항의 구성현황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24곳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조항들에 대한 내용분석으로서 구성현황을 살펴보았다. 단, 작은도서관 조례 대신에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의정부시는 제외하였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조항에 대한 구성현황을 작은도서관의 목적, 정의, 기능, 설치(기준), 시장이나 군수의 책무, 운영인력, 도서관운영, 운영위원회로서 크게 8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도서관운영은 도서관 운영자의 자격 및 책무, 회원제 운영 등의 조항을 조사하였으며, 위탁 운영에 대한 조항은 별도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24곳 중 조사항목 8개 모두를 조례에 포함하고 있는 곳은 화성시 단1곳(4.2%)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화성시의 경우 유일하게 조례의 구성을 먼저 장으로 구분한 후에 해당되는 각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장의 구성은 크게 5장으로서 제1장 총칙(목적, 정의, 기능), 제2장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시설조건, 시장이나 군수의 책무 등), 제3장 운영(도서관운영, 운영인력 등), 제4장 위원회(운영위원회 설치), 제5장 보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4곳의 조례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조항은 2개로서 작은도서관의 목적과 정의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다음으로 시장이나 군수의 책무는 22곳(91.7%),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20곳(83.3%),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와 운영위원회는 각각 13곳(54.2%), 도서관운영은 12곳(50.0%), 인력은 7곳(29.2%)의 순으로 조례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도서관운영 조례에서 위탁운영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곳은 4곳(16.7%)이며, 도서관운영과 위탁운영에 대한 조항을 모두 수록하고 있는 곳은 2곳(8.3%)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조례의 내용을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와 운영인력 측면에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면, 첫째,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에 대한 조례의 경우,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24곳 중에서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에 대한 조례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곳이 11곳(45.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수록하고 있는 13곳의 시군들 중에서도 3곳(23.1%)은 작은도서관 설치가능대상 및 설치 위치 등만 기술하고 있지만 설치기준은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에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도 「도서관법 시

〈표 3〉 경기도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의 구성현황

시군	목적	정의	기능	책무	설치	인력	도서관운영	운영위원회
경기도	○	○	○	○	×	×	×	×
가평군	○	○	○	○	×	×	○	×
고양시	○	○	○	○	○	○	위탁 ○	○
광명시	○	○	○	○	×	○	○	○
광주시	○	○	○	○	○	○	○(위탁 ○)	×
구리시	○	○	○	×	×	×	×	○
군포시	○	○	○	○	○	×	○	×
김포시	○	○	○	○	○	×	×	○
남양주시	○	○	○	○	×	×	○(위탁 ○)	×
부천시	○	○	×	○	○	×	○	○
성남시	○	○	○	○	×	×	위탁 ○	×
수원시	○	○	○	○	×	○	×	○
안산시	○	○	○	○	○	×	○	○
안성시	○	○	○	○	○	×	위탁 ○	×
안양시	○	○	○	○	○	○	×	○
양평군	○	○	○	○	○	○	×	○
오산시	○	○	○	○	○	×	×	×
용인시	○	○	×	○	×	×	×	○
의왕시	○	○	○	○	×	×	×	○
이천시	○	○	○	×	○	×	×	○
파주시	○	○	×	○	×	×	위탁 ○	×
평택시	○	○	○	○	×	×	×	×
하남시	○	○	×	○	○	×	×	×
화성시	○	○	○	○	○	○	○	○

행령」 제3조 별표 1 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항만이라도 간단히 기술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유는 「도서관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있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에서도 명시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광주시, 군포시, 안양시, 이천시, 하남시, 화성시의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명시하고 있는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의 시설과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갖추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김포시, 안성시, 양평군, 오산시의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항을 간단히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에 대한 조례의 경우,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24곳 중에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에 대한 조례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곳이 17곳(70.8%)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에 대한 조례를 수록

하고 있는 7곳의 시군들 중에서도 3곳(42.9%)은 운영인력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확보 운영인력 수나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양평군은 운영인력의 자격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화성시는 확보 운영인력의 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안양시는 둘 다 기술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에서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해당 시군 작은도서관의 봉사대상자의 수와 장서의 규모를 반영하여 확보 운영인력의 수를 명확히 규정할 뿐만 아니라 자격조건도 함께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자격조건의 경우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함으로써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적으로 확보 운영인력의 수와 관련하여 광주시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공립 작은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과 동일하게 운영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고양시와 광명시는 자연봉사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을 확보, 수원시는 자연봉사자를 포함한 3명 이상을 확보, 양평군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운영인력의 자격조건과 관련하여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수원시, 화성시 5곳은 사서자격증 소지자,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도서관학교·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광명시와 수원시는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고양시, 광주시, 화성시는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사항을 기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V. 경기도 작은도서관 조례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과 경기도 시군 작은도서관 조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앞으로 경기도 본청과 각 시군별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하는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의 예시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1. 경기도 본청 작은도서관 조례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현 경기도 본청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의 문제점은 먼저 작은도서관의 목적 및 기능 조항에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인 경향이 미반영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목적 및 기능 조항에서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를 좀 더 반영하여 작은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

(場) 및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에서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및 복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술해주는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간략하게 기술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즉,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및 복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의 마련 및 관련 시책의 적극 추진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상세하게 제시해주는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기도 본청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의 개정방향으로서 먼저 조례명의 선정방법 및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단위(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5곳)에서 제정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명을 김홍렬(2010)의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의 경우 작은도서관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조례 개정(안)의 조례명을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로 선정하였다.

〈표 4〉 작은도서관 조례명 현황

조례명	빈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11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1

출처: 김홍렬, 2010. 작은도서관 설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191-209.

또한 조례의 구성방법 및 근거를 살펴보면, 전국단위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김홍렬(2010)의 연구 및 경기도에 초점을 맞추어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조례의 구성현황을 크게 8가지(목적, 정의, 기능, 책무, 설치, 인력, 도서관운영, 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홍렬(2010)의 연구 및 본 연구에서 밝혀진 8개의 모든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현 경기도 본청의 조례를 토대로 하여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개정(안)’의 조항을 구성하였다.

물론 8개의 조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훌륭한 조례라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조례(안)에서 조례에 수록될 수 있는 모든 조항들을 제시함으로써 개정 시에 이정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개의 모든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조례를 벤치마킹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개정(안)의 총구성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로 이루어졌다. 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부

서의 사명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작은도서관 조례(안)에 관리책임부서와 연락처를 명시하였다. 둘째,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를 좀 더 반영하여 작은도서관의 목적 및 기능 조항에서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및 복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및 복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강조하였다. 넷째, 작은도서관은 설립주체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작은도서관의 설립주체별로 지원의 범위와 규모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할 것을 명시하였다.

다섯째,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전문지식 습득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능력을 함양시키는 시안이 시급할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분기별 워크숍과 같은 보다 실무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자 대상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기술하였다. 여섯째, 현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6조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에 작은도서관의 등록수가 많은 기초 자치단체에 센터를 설치하여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도 본청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의 구성 방향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되,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개정사항 및 사회적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본청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2. 경기도 시군 조례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현 경기도 시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의 문제점은 먼저 챕터의 구분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화성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챕터의 구분이 없었다. 그러나 타 시군(고성군, 나주시, 순천시, 영광군, 영양군, 창원시)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보면, 조항에 대한 챕터의 구분이 있고, 이는 정보의 접근성 및 가독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에 대한 조항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31개 경기도 시군 가운데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24곳 중에서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11곳(45.8%)인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및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31개 경기도 시군 가운데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24곳 중에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무려 17곳(70.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운영인력에 대한 조항을 수록하고 있는 7곳의 시군들 중에서도 3곳(42.9%)은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 시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의 개정방향으로서 먼저 조례명의 선정방법 및 근거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시군 작은도서관 조례 개정(안)의 명칭을 앞의 경기도 작은도서관 조례 개정(안)에서 조사된 전국단위(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5곳)에서 제정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명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조례의 구성방법 및 근거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의 경기도 작은도서관 조례 개정(안)과 동일한 방법 및 근거를 적용하였다. 즉, 김홍렬(2010)의 연구 및 본 연구에서 확인된 8개(목적, 정의, 기능, 책무, 설치, 인력, 도서관 운영, 운영위원회)의 모든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시군(전라남도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영광군, 경상북도 포항시, 영양군, 경상남도 창원시, 사천시, 고성군) 및 현 경기도 시군(화성시)의 조례를 바탕으로 하여 '경기도 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조항을 구성하였다. 8개의 모든 조항을 포함한 시군 조례를 벤치마킹한 이유는 앞의 경기도 본청과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기도 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챕터는 제1장 총칙, 제2장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 제3장 작은도서관 운영, 제4장 운영위원회, 제5장 보칙으로 이루어졌으며, 조항은 전체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구성되었다.

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책임부서의 사명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시군 작은도서관 조례안에 관리책임부서와 연락처를 명시하였다. 둘째,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및 복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시장 또는 군수의 책무를 강조하였다.

셋째,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를 지역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으로서 정보불평등 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과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규정하였다. 넷째, 시설기준 조항에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시설기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공간 내에 커뮤니티 공간을 전체 도서관 면적의 1/3 이상으로 설치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다섯째, 작은도서관의 설립주체가 공동주택단지인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설립만 하고 운영은 주민에게 떠넘겨지는 사례가 많아 설립뿐 아니라 운영에 대한 법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으로서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조항과 운영인력으로서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규정하였다. 이는 시군별로 작은도서관의 봉사대상자의 수와 장서의 규모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작은도서관 확보 운영인력의 수 및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운영시간으로서 주5일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하며, 주말 중 1일은 개관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여섯째, 공립작은도서관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도 시군 작은도서관 조례 구성 방향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되, 지방자치단체마다의 환경 및 특성을 반영하여 각 시군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VI. 논의

문헌연구 및 경기도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논의점으로서 경기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내에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의 효시는 2008년에 광명시와 과주시에서 제정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로 파악되었다. 이는 2006년 도서관법에서 문고를 공공도서관 범위에 포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 관련 도서관법 및 사업의 추진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31개 경기도 시군 중 2012년 이후에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제정된 비율이 17곳으로서 53.1%로 나타났다. 이는 작은도서관진흥법이 2012년에 제정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의 제정이 가속화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기도 내에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도 6곳으로서 18.8%로 집계되었다. 이에 향후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도서관법 조항을 임의조항보다는 강제조항으로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포천시의 경우 2014년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이후 2019년에 폐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는 포천시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진흥법」 및 포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들이 많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에 통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도서관법」에 관련 조항이 있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에서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도 「도서관법」

에서 명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항만이라도 간단히 기술하는 방향을 지향할 것을 제안한다. 단,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규모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조례를 포함하여 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나 독서문화진흥조례 등과 같은 도서관 관련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하여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24곳 중에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에 대한 조례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시군이 17곳으로서 70.8%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운영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로써 향후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당 시군 작은도서관의 봉사대상자의 수와 장서의 규모를 반영한 작은도서관 확보 운영인력의 수 및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을 조례에 필수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자격조건으로서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VII. 결론 및 제언

작은도서관은 최근 그 역할 및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내실화를 통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정책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방향 및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 시군은 6곳(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되는 점으로서 포천시 1곳(3.1%)은 2014년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19년에 폐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포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와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던 것을 이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통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세부적인 조항들의 내용구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8개(작은도서관의 목적, 정의, 기능, 설치(기준), 시장이나 군수의 책무, 운영인력, 도서관운영, 운영위원회) 모두를 조례에 포함하고 있는 곳은 화성시 단1곳(4.2%)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에 대한 조례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시군이 17곳으로서 무려 70.8%에 육박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셋째, 경기도 본청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로 구성하여 제안하였으며, 개정사항으로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부서의 사명과 의무를 강화

하기 위해 경기도 작은도서관 조례(안)에 관리책임부서와 연락처 명시,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를 좀 더 반영하여 작은도서관의 목적 및 기능 조항에서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및 복합 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 등을 들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기도 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챕터는 제1장 총칙, 제2장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 제3장 작은도서관 운영, 제4장 운영위원회, 제5장 보칙으로 이루어졌으며, 조항은 전체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구성되었다. 개정사항으로는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를 지역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으로서 정보불평등 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과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의 규정, 시설기준 조항에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시설기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공간 내에 커뮤니티 공간을 전체 도서관 면적의 1/3 이상으로 설치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항 추가 등을 포함하였다.

다섯째,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작은도서관 관련 도서관법 및 사업 추진 강화, ②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도서관법 조항을 임의조항보다는 강제조항으로 제정, ③ 「도서관법」에 관련 조항이 있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도 「도서관법」에서 명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항만이라도 간단히 기술(단,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규모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서관 관련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하여 운영), ④ 해당 시군 작은도서관의 봉사대상자의 수와 장서의 규모를 반영한 작은도서관 확보 운영인력의 수 및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을 조례에 필수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이 양적으로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향후 작은도서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의 질적인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작은도서관의 가치를 보다 증대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유승. 2014. 작은도서관에 관한 법제적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381-410.
김홍렬. 2010. 작은도서관 설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191-209.
김홍렬. 2014.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자치법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2): 117-138.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2019-2023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8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주성. 2019. 정부, 2022년까지 공공체육관·도서관 등 확충에 30조 투자. 『뉴시스』. 4월 15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415_0000620769> [인용 2020. 4. 22].
- 유양근, 박송이. 2010.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1): 175-192.
- 이승원. 2011.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연구: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223-241.
- 정기원. 2019.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2019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 강화 워크숍 자료집』. 2019년 10월 16-18일. 세종: 문화체육관광부·한국작은도서관협회, 23-28.
- 정현태, 정미연. 2013.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조례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1): 105-122.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인용 2020. 4. 21].
- Noh, Y.H., K.H. Lee. and S.K. Choi. 2018. "A Study on Comparing the Perception between Librarians and Users about Libraries' Value."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8(2): 67-100.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9. *2019-2023 Third Library Development Plan*. 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Joung, H.T. and M.Y. Jung. 2013.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library ordinances in lower tier government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1): 105-122.
- Jung, G.W. 2019. A study on the strategies of developing small libraries at apartment complexes. 『2019 Small library operator empowerment workshop materials』. October 16-18 2019.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Korean Small Library Association 23-28.
- Kim, H.R. 2010. "Analytical study on the ordinance for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smal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191-209.
- Kim, H.R. 2014. "Analysis of local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2): 117-138.
- Kim, Y.S. 2014. "A study on legal issues of smal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3): 381-410.

- Lee, S.W. 2011. "A study of local government supports for small libraries: Analysis on the ordina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4): 223-241.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2018 Small library operation status report*.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nhanced Local laws and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 <<http://www.elis.go.kr/>> [cited 2020. 4. 21].
- Park, J.S. Government, Invest 30 trillion in expansion of public gymnasiums and libraries by 2022. 『Newsis』 . April 15.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415_0000620769> [cited 2020. 4. 22].
- You, Y.K. and S.Y. Park. 2010.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plan for small libraries: Focused on Gyeonggi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1): 175-192.

[부록 1] 경기도 작은도서관 조례 개정(안)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시행 0000.00.00.]

(제정) 0000-00-00 조례 제 호
(일부개정) 0000-00-00 조례 제 호

관리책임부서: ○○○○
연락처: 031-000-00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민이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정보 습득 및 이용격차 해소를 도모하며, 작은도서관이 복합 복지센터로서 평생교육 및 커뮤니티 문화공간의 장으로써 경기도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된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게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및 복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설립주체별로 지원의 범위와 규모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
3.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4.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분기별 워크숍 등 실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1권 제2호)

5.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작은도서관 설립·확대·보수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마다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시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0조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 진흥 활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시는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시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경기도내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수가 많은 기초 자치단체에 설치하여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작은도서관 지원 등) ① 도지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비
 2.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비용
 3.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경비
 4.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업비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
-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③ 도지시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8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지원) 도지시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2.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후원활동의 장려) ① 도지시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기업 등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시는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시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시군 작은도서관 조례 개정(안)

경기도 ○○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0000.00.00.]

(제정) 0000-00-00 조례 제 호
(일부개정) 0000-00-00 조례 제 호

관리책임부서: ○○○○
연락처: 031-000-00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복합복지센터로서 평생교육 및 커뮤니티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된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게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2장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과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역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2. 가급적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로서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

3.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5조(시설기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1,000권 이상의 도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3.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커뮤니티 공간을 전체 도서관 면적의 1/3 이상으로 설치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6조(시장 또는 군수의 책무) ○○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또는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의 중심점 및 복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 및 폐관) ①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등록취소) 시장 또는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 또는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비
2.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3.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비 및 운영비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제3장 작은도서관 운영

제10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의 직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2. 매년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초·중등교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

제11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5일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문화 환경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4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호서식의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5조(자료대출) ①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게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② 자료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1회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이관 및 폐기 등)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염·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자료의 이관 및 폐기 또는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1/2이상을 작은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방법 및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자료 확보 및 폐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장 보칙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공립작은도서관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포상)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시 또는 ○○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